

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2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고자 2009. 12. 30. 제정·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1. 25~2. 14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